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심 사 보 고 서

2019. 10. 2.

행정위원회

1. 심사경과

- 가. 발의일자: 2019년 9월 19일
- 나. 발 의 자: 고기판 의원 외 3명
- 다. 회부일자: 2019년 9월 24일
- 라. 상정일자: 제216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

행정위원회 제1차 회의(2019. 9. 27.) 상정 의결

2. 제안설명의 요지(제안설명자: 고기판 의원)

가. 제안이유

-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, 기본 조례와 중복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나. 주요내용

- 효율적인 청년정책과 청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기본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.

(제2조제2호, 제6조제2항, 제7조, 제9조부터 제14조까지, 제17조)

3.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(전문위원: 임경태)

-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『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』 제정에 따라 중복되는 규정을 정비하고자 개정하는 것으로서,
- 주요내용으로는,
 - 제2조제2호, 제6조제2항, 제7조, 제9조부터 제14조까지, 제17조에서 규정된 청년 정책위원회의 설치, 위원회의 임기 등 청년 기본 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하였음.
- 검토결과,
 - 기본 조례와 중복 또는 상호 배치되는 내용을 규율하는 경우 조례의 명확성, 예측가능성 및 조례의 신뢰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하게 된다고 할 것이므로,
 - 기본 조례와 중복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규율 내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을 위한 본 일부개정은 타당하다고 사료됨.

4. 심사결과: 원안 가결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(고기판 의원 대표발의)

의안 번호	151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2019년 9월 일

발의자 : 고기판 의원 외 3명

1. 제안이유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 기본 조례 제정에 따라, 기본
조례와 중복되거나 충돌되지 않도록 조례를 개정하여 내
용의 정당성 및 법적합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효율적인 청년정책과 청년지원사업 추진을 위해 청년기본
조례와 중복되는 규정을 삭제함.

(안 제2조, 제6조, 제7조, 제9조부터 제14조까지, 제17조)

3. 개정안 : “별첨”

4. 참고사항

가. 관련 근거

- 「청년고용촉진 특별법」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입법예고 (2019. 9. 10 . ~ 9. 16.) : 의견 없음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일자리 창출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2호를 삭제한다.

제6조제2항을 삭제한다.

제7조,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및 제17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24조제1항을 제목외의 부분으로 하고 같은조 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2조(정의)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.	제 2 조 (정 의) ----- -----.
1. (생략)	1. (현행과 같음)
2. “청년 정책”이란 청년의 정치·경제·사회·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참여 확대, 권익증진, 청년 발전을 목적으로 하는 정책을 말한다.	<삭 제>
3. (생략)	3. (현행과 같음)
제6조(청년사업 추진·지원)	제6조(청년사업 추진·지원)
① (생략)	① (현행과 같음)
② 구청장은 청년의 고용확대와 생활안정을 위해 다음 각 호의 청년사업 정책을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.	<삭 제>
1. 청년의 직업역량 강화 및 취업 지원	
2. 청년의 어려운 창업환경 개선과 안정적인 기반조성	
3. 청년이 합리적 금융생활을 할 수 있도록 교육과 상담 실시	
4. 청년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	

문화 활성화

제7조(청년의 참여 확대 등) ①

구청장은 청년의 사회참여를 보장하고, 청년 일자리 창출사업 확대를 위해 노력 하여야 한다.

② 구청장은 청년사업 지원 및 청년 활동 촉진을 위해 예산의 범위 내에서 교육, 캠페인, 프로그램 운영, 활동비 등을 지급 할 수 있다.

제9조(청년정책위원회의 설치)

① 구청장은 청년정책에 관한 주요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청년정책 위원회(이하 “위원회” 라 한다)를 둔다.

②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위원장은 부구청장이 되고,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.

③ 위원은 당연직과 위촉직으로 구성하며, 당연직은 청년정책 및 지원 등 업무를 담당하는 과

<삭 제>

<삭 제>

장급 이상 공무원 6명이내로 한다.

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구청장이 위촉하되, 청년을 3명 이상 포함하여야 한다.

1. 청년단체에서 활동한 경험이 풍부한 사람

2. 청년정책과 관련된 학식과 전문성을 보유한 사람 및 관계기관의 장

3. 대학의 청년지원 관련 실무 담당자

4.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회의원 2명

5. 그 밖에 청년정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람

제10조(위원회의 임기)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,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,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. 다만,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한다.

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

<삭 제>

위원회 업무를 총괄하며,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그 직무를 대행한다.

제11조(위원회의 심의사항) 위원회는 청년발전을 저해하는 생활불안정 요소를 적극적으로 찾아내고, 이를 해소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.

1. 청년일자리 창출 및 고용촉진 등 청년정책의 기본계획 수립 및 평가에 관한 사항
2. 청년정책의 시행을 위한 관련 사업의 조정 및 협력에 관한 사항
3. 그 밖에 청년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

제12조(위원의 해촉)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임기 중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.

1. 위원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할 때
2.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

<삭 제>

<삭 제>

하거나 남용할 때

3. 건강 등 개인 사정으로 위원

스스로가 해촉을 원할 때

4. 위원으로서 계속 활동하는

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때

제13조(회의개최) ① 위원회의

회의는 연 2회 정기회의를 개

최하고, 이 외에 위원장이 필

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와 재

적위원 3분의 1이상의 회의소

집 요구가 있을 때에 위원장이

소집하며, 회의는 재적위원 과

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

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② 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

수행하기 위하여 정책분야별 분

과회의를 둘 수 있다. 다만, 분

과회의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

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

위원장이 정하되, 분과회의의 구

성 시 청년을 포함하여야 한다.

③ 위원회의 각종 사무를 처리

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, 간사

는 청년일자리 정책 업무 담당

주사가 된다.

④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 이

<삭 제>

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.

제14조(수당 등)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.

<삭 제>

제17조(시설 설치 및 운영) ① 구청장은 청년정책 추진 등을 위한 청년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<삭 제>

② 구청장은 청년시설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 할 수 있다.

③ 구청장은 청년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·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청년지원 관련 법인이나 또는 청년사업을 희망하는 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.

④ 구청장은 제3항에 따라 청년시설의 운영을 위탁하는 경우가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「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」를 따른다.